

나눔과 사랑의집 급여 이용정보

- 목 차 -

1. 기관개요
2. 설립목적
3. 운영목표
4. 기관연혁
5. 운영방향
6.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7. 배상책임보험 가입여부
8. 입소절차 및 계약안내
9. 이용계약에 관한사항
10. 입소비용 기준내용
11. 필요시 의료이용 절차
12. 시설규모 및 설비현황
13. 시설물 사용안내
14. 직원현황

♥ “가정처럼 편안한집” ♥

나눔과 사랑의집

나눔과 사랑의집 급여이용정보

1. 기관개요

시 설 명 : 나눔과 사랑의집
소 재 지 : 충남 금산군 금성면 화림월곡길11-4(화림리326번지)
시설종류 : 노인요양 공동생활가정
설 립 일 : 1972년 05월 10일(인가일:2006년 04월 12일)
대 표 자 : 이 봉 석
시 설 장 : 박 나 라

2. 설립목적

○ 노인성질환 등으로 생활해야 하는 소외된 어르신들과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어르신들에게 자연의 아름다움 속에서 가정과 같은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신체 활동 또는 가사활동지원서비스 제공을 하는 등의 장기요양급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유지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도록 함과, 나눔과 사랑을 실천하는 나눔과사랑의집의 설립목적으로 한다.

3. 2025년 운영목표

- ※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켜주며, 어르신의 특성에 맞는 서비스제공을 통해 심신의 건강유지를 할 수 있도록 하고 편안함과 안락함을 제공한다.
- ※ 질병의 조기진단과 치료 및 예방을 중점적으로 관리하여 건강한 삶을 영위 할 수 있도록 한다.

※ 나눔과 사랑의집 비전(Vision)

- ① 체계적인 요양서비스를 통해 어르신 및 가족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다.
- ② 항상 처음과 같은 마음으로 개인 및 기관의 역량강화를 위해 노력한다.
- ③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복지서비스를 제공한다.
- ④ 행복하고 건강한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 나눔과 사랑을 실천한다.

4. 연 혁

- 최초설립일: 1972년 5월 10일 기도원
- 1996년 07월 10일 화림교회수양 관 명칭개편(기독교사회복지실천분야)
- 2002년 06월1일 나눔과 사랑의집 조건부신고시설 10인 이상(신고필증)
- 2004년 05월 24일 나눔과 사랑의집(노인주거복지시설 인가신고)
- 2006년 04월 12일 나눔과 사랑의집 사회복지시설 신고수리(개인운영)
- 2008년 07월 25일 나눔과 사랑의집 노인장기요양기관지정(노인요양시설)
- 2009년 05월15일 노인의료복지시설 설치신고필증교부(노인요양시설)
- 2011년 10월 18일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설치(신고필증)

5. 운영방향

(1). 운영방침

- 1)시설 장은 입소자와의 입소계약에 따라서, 본인부담금 및 비 급여비용에 대하여 권리와 의무, 책임에 관한 사항들을 준수한다.
- 2)소정의 양식들을 구비하여 잘 기재한다.
 - 입소자 관리카드
 - 입소계약서 및 입소자 관계서류
 - 봉사자 및 후원자방문 기록(후원물품 개재 포함)
 - 기타 증빙서류
- 3)직원 및 입소자 관리
 - 의료제휴 : 협력병원과의 긴밀한 협조와 시설 내에 활력증후검사를 일일 or 수시로 체크하여 입소어르신들의 건강을 수시로 확인하고 응급 시 신속한 대응을 할 수 있도록 한다.
 - 영양보호사는 입소자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필요한 생활지도를 하도록 하고 업무(특이사항) 일지에 구체적으로 기록한다.
 - 시설 장은 입소자의 건강상태나 심리상태를 고려하여 수시로 입소자와 상담을 하거나, 관찰, 지도하고 특이사항을 기록 유지한다. 상담 후 상담일지를 남긴다.
 - 시설 장은 입소자의 의사와 권리를 최대한 존중한다.
 - 시설 장은 종사자들이 필요한 영양프로그램이나 교육을 받도록 해주고, 이들의 복지증진에 노력한다.

(2). 위생·건강관리

- 1)근거리 지역에 의료기관과 협약을 체결하여 월2회 시설을 방문하여 진찰한다. 입소자의 건강상태를 확인하고 건강상태가 악화된 입소자는 입원하여 치료하도록 한다.
- 2)입소자 및 직원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건강진단을 받게 하여 건강진단 결과에 따른 적절한 치료를 받게 한다.
- 3)입소자의 건강 상태에 따라 체조와 일과표에 따라 규칙적으로 영양보호사의 지도와 수발을 받으며 생활하고, 정기적인 물리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도움을 준다. 또한 각종 의료 기구를 설치하여 영양보호사의 지도와 수발에 따라 사용하여 입소자의 건강상태를 호전되도록 한다.
- 4)시설의 실내·외 생활환경을 항상 청결 유지하기 위하여 수시로 청소와 정기적 소독을 하여 입소자들이 쾌적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한다.
- 5)음용 수에 대하여, 수질검사를 받고 정기적으로 정수기의 필터교환과 내부세척을 해준다.

(3). 프로그램 운영

- 입소노인 대상 시설적응, 건강관리 증진에 긍정적 효과를 기대하며 다양한 프로그램 제공으로 활기찬 입소생활 영위를 유도하여 삶의 질향상에 기여한다.
- 인지프로그램 : 어르신들의 인지에 맞게 다양한 인지프로그램을 통하여 집중력과 기억력 수준을 유지하고 수행능력향상을 기대할 수 있다.
- 여가프로그램 : 사회적 상호작용을 촉진하며 정서적인 안정을 도모하고 잔존기능상실예방을 통하여 건강유지 및 증진을 기대할 수 있다.

- 지역사회 행사프로그램 : 어르신들의 더 나은 건강과 정서적 건강상태에 중점을 두고 연1~2회 이상 다양한 행사참여를 함으로서 정신적, 정서적 안녕감을 향상, 신체활동 증가로 사회적 상호작용과 자연과의 연계의 기회가 되어 삶의 질 향상에 기여 할 수있다.
- 신체기능프로그램 : 신체기능저하 예방, 잔존기능상실 예방, 화합과 친목을 도모, 성취감, 자존감 회복으로 어르신들의 삶에 활력을 불어넣고 심리적 안정감을 높일 수 있음을 기대할 수 있다.

6. 장기요양 급여의 종류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시설급여(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비고
입소정원	9명	

7. 배상책임보험 가입여부

- 화재보험 : 무배당삼성화재 재물보험 성공예감[삼성화재]
- 영업배상책임보험 : 무배당 삼성화재 재물보험 비즈앤안전 파트너[삼성화재]

8. 입소절차 및 계약 안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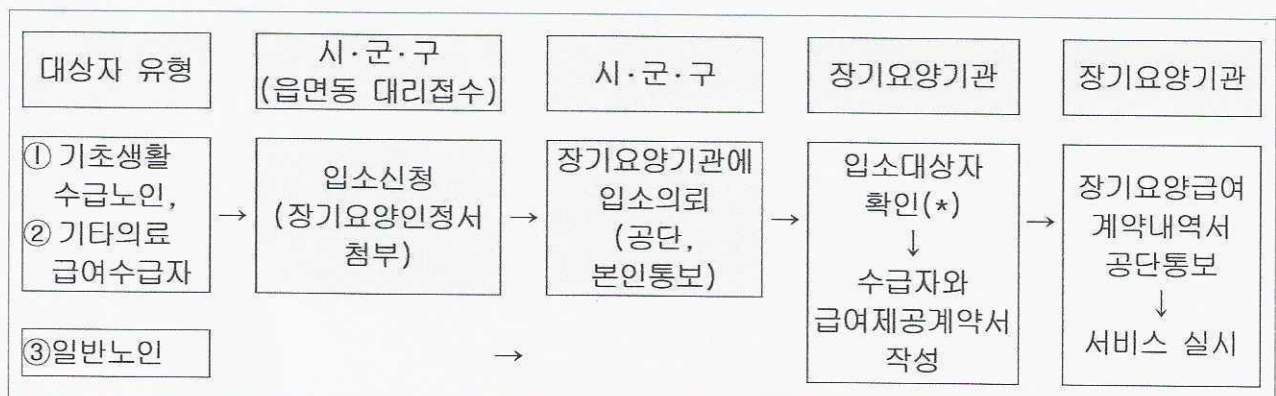
※ 입소대상자

65세 이상 노인 또는 65세 미만의 노인성 질병을 가진 대상자로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장기요양보험등급1, 2등급을 받으신 어르신 및 3(4)등급은 시설급여를 받으신 어르신.

※ 입소 시 구비서류

1. 장기요양등급인정서
2. 장기요양이용계획서 건강진단서 2통
(전염성 질환 여부 기재된 진단서, 개인 질환에 대한 건강진단서)
3. 주민등록등본1 통
4. 복용하시는 약(처방전, 복용약)
5. 주민등록증 사본, 가족관계증명원
6. 시설연계 시 연계기록지

※ 입소 절차



◇ 장기요양등급신청(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인정조사 및 등급판정(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
→개별결과통지→시설입소 (일반이용자)

◇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의료급여수급자>

☞ 군청에 장기요양기관 입소·이용의뢰 신청 → 요양기관에 이용의뢰서 통보 →시설입소.

9.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① 입소계약

- 나눔과 사랑의집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은 입소어르신들의 심신의 안정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어르신에 대하여 본 계약이 정한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준수함을 약정하고, 입소자(보호자)는 이것에 대하여 이 계약이 정하는 것을 승인하고 필요한 비용을 시설에 지불할 것이며 본 계약이 정한 각종조항을 성실히 준수 할 것을 약정하며,
- 건축물·가구·기타 조악 물과 부지와 더불어, 식당, 욕실, 휴게실, 프로그램실, 기타 공동 서비스시설에 대하여 입소자는 시설의 지시에 따라 다른 이용자와 같이 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한 것이다.
- 입소계약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운영규정에 의한 계약변경이나 해제가 없는 한 계약의 종료 시까지 존속하는 것으로 한다.

② 계약기간

- 서비스이용계약은 등급인정유효기간까지 설정이 되며, 서비스이용자의 요청 시 변경 가능.

③ 계약의 해제

- 계약서상의 계약 만료 시 또는 계약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해 해제됨.

10. 입소비용 기준내용

입소구분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일반 어르신	국가보조80% + 본인부담금 20% + 비급여(식대·간식·이·미용)
경감대상자	국가보조92%~88% + 본인부담금 8%~12% + 비급여(식대·간식·이·미용)
국민기초수급권자	국가보조 100% + 본인부담금 무료(비급여)
의료수급권자	국가보조 90% + 본인부담금 10% + 비급여

◇ 본인부담금 급여계약내용 (2025.01.01.기준)

구 분	수가(일)	횟수/(월)	금 액(원)			
			일 반	경감대상자12%	경감대상자8%	기초수급자
1 등급	72,480	30/	434,700	260,700	173,700	0
2 등급	67,250	30/	403,500	242,100	161,400	0
3~4등급	62,000	30/	372,000	223,200	148,800	0
금액은 30일 기준 본인부담금 내역(월 31일 경우 1일 수가 추가됨)						
■일반(20%) ■ 경감(12%) ■ 경감(8%) ■기초수급자(0%) ■기타 의료급여수급자(10%)						

◇ 비 급여계약내용

항 목	기 간	단가/횟수	일수/월	금액
약제비	입소계약기간 (장기요양인정서 기준)	*	*	(실비)
아·미용비		*	*	*
식대비		2,500*3	30일	225,000원
간식비		1,500*1	30일	45,000원
비 급여 합계		270,000원		

※31일일 경우 하루비용이 추가되어 계산됨.

11. 필요시 의료이용 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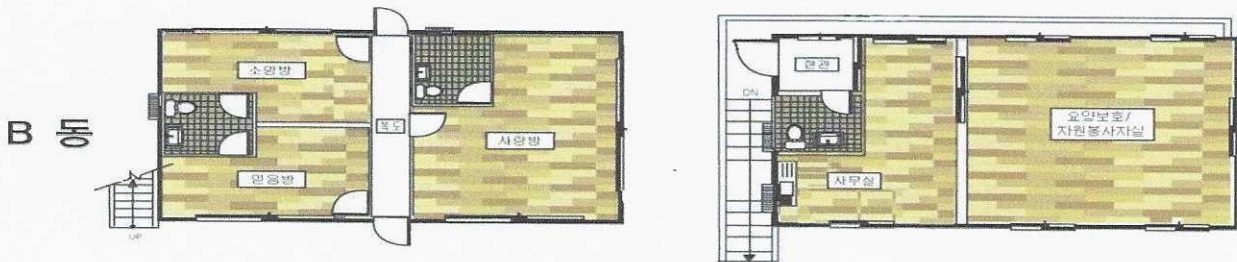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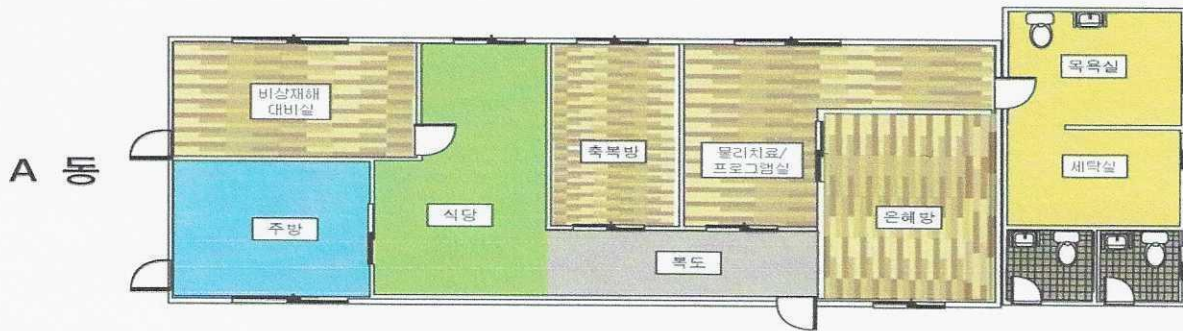
- 입소어르신의 질환이나 부상한 경우 또는 시설이 정한 의사의 진단에 의해, 치료를 필요로 하는 때는 약물치료의 요양 또는 물리치료 등, 시설 자체의 가능한 치료는 시설장의 책임 하에 실시하기로 하고, 중환자 또는 수술을 요하는 질환일 경우는 입소인 및 신원인수인과 상담을 통해, 신원인수인의 책임 하에 시설의 지정병원 또는 각자의 선택에 의한 기타 의료시설 등에서 치료를 받도록 해야 한다.
- 입소인의 치료를 위한 병원이용 및 기타 의료시설의 비용은 입소 인이 부담하도록 한다.

12. 시설규모 및 설비현황

- 소 재 지 : 충남 금산군 금성면 화림월곡길11-4(구 지번: 금성면 화림리 326번지)
- 대지면적 : ① 469㎡(141.87py), ② 72㎡(22py), ▣ 합계: ① + ② = 541㎡(164py)
- 건축면적 : 전체 248.48㎡(75.17py)/개별(A동 단층_97.02㎡/ B동1F_76.46㎡, B동2F_75㎡)
- 유 형 : 노인장기요양기관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대지 총면적		541㎡		건축 총면적		248.48㎡		
구분	주방	식당	비상재해 대비실	축복방	은혜방	프로그램실 (물리치료)	목욕실 세탁실	세탁실 (다용도)
A동1층	1	1	1	2인실	2인실	1	1	1
구분	밌음방	소망방	사랑방	화장실	상담실	사무실/ 요양보사/ 자원봉사자실		
B동1층 /2층	2인실	2인실	3인실	2(1층) 1(2층)	1(2층)	1(2층)		
※ 침실현황 : 2인실(3개소), 3인실(1개소), ※ 특별침실2인실(1개소)/ ※ 상담실 (1개소)								

1. 시설평면도(A동1층/ B동1/2층)



13. 시설물 사용 안내

- ◇ 식당, 욕실, 상담실 : 필요시 개인욕구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가능 함.
- ◇ 휴게실 및 프로그램실 : 타인에게 피해가 가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항시 이용가능 함.
- ◇ 산책로 : 보호자 및 직원의 동행 하에 필요시 이용가능 함.

14. 직원현황

직 종	대표자	시설장 (사회복지사)	간호(조무)사	요양보호사1급	계약의사	총인원
종사자 정원	1명	1명	1명	3명	1명	7명

※ 직원(종사자) 현황

연번	직 책	인원	자격 현황
1	시설장	1인	사회복지사/간호사/
2	간호(조무)사	1인	간호사(간호조무사)
3	요양보호사	3인	요양보호사 1급
4	계약의사	1인	의사면허
5	조리원	1인	요양보호사 1급/장애인활동보조인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종사자 입소자 비율

기준비율			현재 비율		
종사자	입소자	1:3	종사자	입소자	3:9
1명	3명		3명	9명	

종사자 근무체계

평일/주간근무인력	야간근무인력	휴일근무인력
4~5명	1명	2명
시설장, 영양보호사 간호조무사, 조리사	영양보호사or간호조무사 (상주근무/비상시)	영양보호사or간호조무사 (시설장/대표자)

♥ “가정처럼 편안한집” ♥
나눔과 사랑의집